

Tax Services

# 인도네시아 포켓텍스북 **2015**



[www.pwc.com/id](http://www.pwc.com/id)

# Contents

<b>Corporate Income Tax 법인소득세</b>	1
Tax rates; Tax residence; Tax payments; Business profits; Capital allowances; Disallowed deductions; Losses; Profit distributions; Deemed profit margins; Special industries and activities; Transfer Pricing	
<b>Individual Income Tax 개인소득세</b>	12
Normal tax rates; Concessional tax rates; Main personal relief; Tax residence; Registration and filing; Tax payments; Benefits-in-kind (BIK); Social security system; Deemed salaries	
<b>Withholding Taxes 원천세</b>	18
Articles 21, 22, 4(2), 23 and 26 income taxes	
<b>International Tax Agreements 국제조세협약</b>	24
Double Taxation Agreements;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b>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b>	31
General; VAT exemption facilities	
<b>Luxury-goods Sales Tax 사치품소비세</b>	39
Taxable goods other than motor vehicles; Motor vehicles	
<b>Customs and Excise 관세와 증지세</b>	42
Import Duty; Export Duty; Excise	
<b>Tax Concessions 조세편의</b>	45
Income tax concessions; LST concession; Concessions on special projects and special zones	
<b>Land and Building 부동산세</b>	53
Land and building tax; Tax on land and building transfer; Duty on the acquisition of land and building rights	
<b>Stamp Duty 인지세</b>	56
<b>Tax Payments and Tax Return Filing 납부 및 신고</b>	58
<b>Accounting for Tax 세무기장</b>	61
<b>Tax Audits and Tax Assessments 세무조사와 세금추징</b>	63
<b>Tax Collection Using Distress Warrant 압류영장을 통한 징수</b>	68
<b>Tax Dispute and Resolution 조세불복과 해결</b>	70
Objections; Appeals; Other avenues for tax dispute resolution; Judicial Review Requests to the Supreme Court	
<b>Contacts 연락처</b>	73

## Corporate Income Tax 법인소득세

### Tax rates 적용세율

일반적으로 단일세율 25%를 적용합니다. 총 발행주식의 40% 이상을 공개하고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보다 5% 가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납세소득 48억 루피아까지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연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 기업은 매출액의 1%를 최종분리과세로 적용합니다.

### Tax residence 세법상 거주자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세법상 거주자로서 인정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에서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일반적으로 거주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Tax payments 납세방법

거주자인 납세자 및 외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은 직접 납부, 제3자 원천징수 또는 두 가지 혼합의 방법으로 조세채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 소득을 지불하는 인도네시아 상대방을 통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인도네시아가 원천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인 납세자 및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의 선납으로서, 월 선납법인세 (PPh 2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 선납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연도 법인세신고 (Corporate Income Tax Return, 'CITR')를 기초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규 납세자, 금융리스회사, 은행,

정부소유기업, 상장회사 및 정기 보고의무가 있는 납세자 등은 특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특정소득에 대한 제3자의 원천징수 (PPh 23) 및 특정거래에 대한 선납법인세 (PPh 22, 수입법인세) 또한 당해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한 선납으로 기납부세액을 구성합니다. (원천징수세 참조)

연간 선납한 법인세 총액 (PPh 22, 23 및 25)과 해외납부세액 (PPh 24)의 합계액이 납부할 법인세액보다 작은 경우, 납세자는 법인세신고 이전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납부의무는 PPh 29에 따릅니다.

거주자인 납세의무자 및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특정소득은 최종분리과세 (Final Income Tax)됩니다. 최종 분리과세 (PPh 4(2))란, 제3자에 의한 원천징수로 해당 특정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세 참조)

인도네시아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귀속되는 인도네시아 원천의 소득은, 인도네시아 내의 거래상대방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PPh 26).

### Business profits 과세소득

세무상 과세소득은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특정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확보, 회수 및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된 비용이 즉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apital allowances 고정자산

### Depreciation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자산과 관련된 지출은 취득월부터 다음의 유형별로 감가상각하며,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사용합니다. 각 유형별 해당자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ategory 1 – 50%** (정률법) or **25%** (정액법) 내용연수 4년: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가구 및 목재 비품, 사무실 비품, 오토바이, 특수 산업·서비스용 특수공기구, 주방기구, 농임어업용 수작업공구, 음식료산업용 경량기계, 공공운송업용 차량, 반도체 산업용 공구, 심해정박 장비 렌탈용 기구비품,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
2. **Category 2 – 25%** (정률법) or **12.5%** (정액법) 내용연수 8년: 금속 가구 및 기구, 에어컨, 승용차, 버스, 트럭, 스피드 보트, 컨테이너류, 농임어업용·식료품용 기계, 경량기계, 벌목기구, 건축용 도구, 운송·창고용 중장비, 통신공구, 반도체 산업용 공구, 심해정박 장비 렌탈용 기구비품, 휴대전화서비스용 공구.
3. **Category 3 – 12.5%** (정률법) or **6.25%** (정액법) 내용연수 16년: 일반 광산업용 기계 (석유가스 제외), 봉제·목재·화학공장·기계제작 사업용 기계, 운송·통신용 중장비, 부두설비 및 선박, 기타 다른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4. **Category 4 – 10%** (정률법) or **5%** (정액법) 내용연수 20년: 건설용 중장비 기계, 기관차, 철도운송도구, 대형 선박, 부두.
5. **Building category – 5%** (정액법) 내용연수 20년인 상설 건물; 또는 10% (정액법) 내용연수 10년인 비상설 건물. 토지·건물 취득세(*Bea Pengali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를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상기 각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보다 구체적인 자산의 내역은 재무부장관령 (MoF regulation No. 96/PMK.03/2009)에 규정되어 있으며, 오일·가스산업 자산의 세부 자산별 감가상각률 역시 재무부장관령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산업(예를 들어, 조림, 플랜테이션 및 목축업)에 사용되는 자산이나 경제발전통합지구(KAPETs) 내에서 사용되는 자산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Amortisation 감모상각**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건물사용권, 상업사용권, 토지사용권 등의 기한 연장비용과 영업권 포함)에는 다음 상각 방법이 적용됩니다:

- a.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상기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categories 1, 2, 3, 4로 구분하여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상각합니다:

Category 1: 4 년

Category 2: 8 년

Category 3: 16 년

Category 4: 20 년

내용연수에 가장근접한 적절한 category로 구분합니다(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6년인 무형자산은 Category 1 또는 Category 2를 적용,

내용연수가 5년인 무형자산은 Category 1을 적용).

- b. 법인설립비용과 법인증자와 관련된 비용은 당해연도에 즉시 비용처리하거나, 아래의 구분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상각합니다:

Category 1: 50% 정률법; 25% 정액법

Category 2: 25% 정률법; 12.5% 정액법

Category 3: 12.5% 정률법; 6.25% 정액법

Category 4: 10% 정률법; 5% 정액법

- c. 1년 이상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권 취득 비용은 생산량비례법 (Production-unit method)으로 상각합니다.
- d. 1년 이상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 광업권 (mining rights), 조림권 (forest concessions) 및 기타 천연자원 개발권 (other rights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and natural products)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나, 연간 상각비가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 상업활동개시 이전의 비용으로, 경제적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기 b. 기준에 따라 상각합니다.

### Asset transfers 자산이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회사 자산의 매각의 경우, 매각대가와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차손익이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은 당연 과세대상이나, 양도차손은 자산이 사업목적(예를 들어, 과세소득을 획득, 회수 및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Revalua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재평가

루피아 장부기장을 하는 회사와 고정사업장은 국세청장 (Director General of Tax, 'DGT')의 승인을 얻어 비유동 유형자산에 대한 세무상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는 매 5년마다 가능하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내 모든 사업 관련자산(토지는 제외 가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산재평가 신청 전, 모든 납세의무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재평가는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시장가치는 정부가 승인한 평가법인 (KJPP)에 의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해당 금액이 자산의 시장 또는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승인 후, 감가상각은 새로운 세무상 자산가치(승인된 가치)를 기준으로 신규자산 취득과 동일하게(잔존내용연수가 아닌, 전체 내용연수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공정시장 가치가 자산의 기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재평가차액)은 10%의 세율로 최종 분리과세 되며, 납세자가 재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 하에 1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평가 후 카테고리 1,2에 포함되는 고정자산은 적어도 각각의 내용연수가 종료할 때 까지는 처분 또는 양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토지, 건물 및 카테고리3,4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은 재평가일로부터 최소한 10년 동안은 처분 또는 양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처분·양도 시에는 최초 재평가차액에 추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분리과세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정부의 의사나 정책 또는 법원판결에 따른 자산의 이전;
- b. 비과세 합병, 결합 또는 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
- c. 회복할 수 없는 손상에 의한 고정자산의 폐기.

[관련규정: 재무부장관령 No. 79/PMK.03/2008, 국세청장시행규칙 No. PER-12/PJ/2009]

### Disallowed deductions 손금불산입 비용

다음의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a. 복리후생성격의 비용 (Benefits-in-kind, 'BIKs') (예를 들어, 주택제공,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의 취득 및 유지비용의 50%). 다만, 회사가 사업장에서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혜택(방호복 및 작업복, 통근교통비, 선원 등에 대한 숙박장소 제공, 특정의 원격지에서 제공되는 현물지급비용, 휴대전화의 취득 및 유지비용의 50%)은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b. 사적비용;

- c. 사업과 관련 없는 선물 및 기부. 단, 특정 종교적 기부는 예외;
- d. 다음을 제외한 충당금: 은행과 특정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권예탁협의회 (*Lembaga Penjamin Simpanan/LPS*)의 예탁보증 준비금, 광업회사의 복구충당금, 산림협회 산림준비금, 산업폐기물 처리 회사의 사업장 유지 및 폐쇄 준비금;
- e. 소득세 납부액;
- f. 조세 페널티(지연이자와 벌과금 등);
- g. 이익 배당금;
- h. 생명, 건강 및 사고보험의 회사 부담분과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연금펀드 (Pension fund)의 회사 부담분. 단, 해당 금액이 종업원의 과세대상 급여로 포함할 경우 손금 산입 가능;
- i.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수익과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은행예치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 j. 비과세대상인 소득과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주식매입을 위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식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이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k. 파트너쉽이나 협회 등에서 출자에 대해 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급여나 보상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 Losses 결손금

결손금의 이월기한은 최대 5년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특정 사업 및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기한은 최고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의 소급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 병합 납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Profit distributions 이익배당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거주자인 수익자

인도네시아 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으로, 수취인이 인도네시아 법상 유한책임회사 (*Perseroan Terbatas/PT*), 협동조합 또는 정부소유기업이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 배당이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것일 것; 그리고
- 배당을 수취하는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지분의 최소 25% 이상을 보유할 것.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취배당은 회사의 다른 소득과 함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배당은 PPh23 규정에 따라 15%의 원천세가 적용되며, 원천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을 구성합니다.

개인거주자가 수취하는 배당금은 최대 10%의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b. 비거주자인 수익자:

비거주자인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20%의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조세협약에 따라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Deemed profit margins 인정이윤과세

아래의 산입은 세무상 인정이윤에 따라 과세됩니다:

	매출액 대비 인정이익률	유효법인세율
국내 해운업	4%	1.20% <sup>1</sup>
국내 항공업	6%	1.80% <sup>1</sup>
외국 해운 및 항공업	6%	2.64% <sup>1</sup>
외국 석유·가스 시추업	15%	3.75% <sup>2</sup>
특정 상공부(Ministry of Trade) 대표사무소	수출액의 1%	0.25% <sup>2</sup>

<sup>1</sup> 유효법인세율 (effective income tax rate, 'EITR')은 재무부 (Minister of Finance, 'MoF')에서 인정이윤과세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과거 법인세율인 30%를 적용하여 계산됨.

<sup>2</sup> 유효법인세율인 현행 법인세율인 25%를 적용하여 계산됨. 다만, 지점이윤세(Branch Profit Tax, 'BPT')율은 조세협약에 따라 경감될 수 있음.

## Special industries and activities 특정산업과 영업

인도네시아에서는 특정 계약에 기초한 컨세션이 가능합니다. Production Sharing Contracts (PSCs) 및 Contract of Works (CoWs)이 이에 해당합니다. Upstream 석유·가스 산업과 지열발전 산업은 PCSs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특정 금속·광물 및 석탄 회사는 CoW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특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율, 공제가능 비용 및 과세소득산정방법 등에 있어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에 근거한 조세혜택은 2009년부터 시행된 신광업법(the New Mining Law)에 의해 새로운 광업 프로젝트에는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광업법은 광업 프로젝트에 일반적인 법률과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광업 라이선스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조세혜택만 부여됩니다.

##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소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25%이상 보유한 경우;  
2개 이상의 동일한 피투자회사에 각각 25%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주주간의 관계 및 해당 피투자회사들간의 관계;
- 직간접적으로,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를 통제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납세자가 동일한 통제하에 있는 경우; 또는
- 배우자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배우자,  
친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정상가격의 원칙 (the arm's length principle)을 따라야 합니다. 정상가격의 원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거래에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과세수익이나 손금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기본법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KUP*)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가 정상가격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이전가격문서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이슈는 인도네시아 국세청 (Indonesian Tax Office, 'ITO')에서 면밀히 검토되고 있어,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신고시 필요한 이전가격 관련 구체적인 신고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의 성격과 금액;
-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해당 방법을 선정한 근거; 그리고
- 회사가 이전가격문서를 준비하였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연간 100억 루피아(약USD1 million)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이전가격문서를 갖추어야 하며, 세무조사 시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이전가격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불복은 국내 절차인 이의제기 (Objection)와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가 인도네시아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관련 조세협약 상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 조항에 따라 이중과세 경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상호합의와 국내 불복절차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호합의는 소송의 최종심리 (last Tax Court hearing)이전까지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호합의 종결 이전에 조세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상호합의 절차는 중지됩니다.

세법은 국세청이 납세자 또는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 미래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되는 정상가격에 대해 사전가격합의 (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s’)를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 하고있으며, 체결 과정에서 외국 세무당국과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체결된 APA는 일반적으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과세기간 이후 최대 3년간 유효합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조세범법행위가 없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APA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 과세기간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APA의 소급적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납세자와 국세청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Individual Income Tax 개인소득세

### Normal tax rates 일반세율

대부분의 개인인 세무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은 다음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Taxable Income	Rate	Tax Rp.
On the first Rp. 50,000,000	5%	2,500,000
On the next Rp. 200,000,000	15%	30,000,000
On the next Rp. 250,000,000	25%	62,500,000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500,000,000	30%	30% of the relevant amount

### Concessional tax rates 감면세율

퇴직금으로 2년 내에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의 세율로 최종분리과세 됩니다:

Taxable Income	Rate	Tax Rp.
On the first Rp. 50,000,000	Nil	Nil
On the second Rp. 50,000,000	5%	2,500,000
On the next Rp. 400,000,000	15%	60,000,000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500,000,000	25%	25% of the relevant amount

정부승인 연금펀드에서 지급하는 정액 연금 (lump-sum pension)과 정부 사회보장공단 (*BPJS Ketenagakerjaan*)에서 지급하는 노후저축 소득 (2년 내 지급 분)은 다음의 세율로 최종분리과세 됩니다:

Taxable Income	Rate	Tax Rp.
On the first Rp. 50,000,000	Nil	Nil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 50,000,000	5%	5% of the relevant amount

3년 차 지급분부터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 Main Personal Relief 주요 소득공제

거주자인 개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연간 소득공제(*Penghasilan Tidak Kena Pajak/ PTKP*)가 적용됩니다:

	Rp.
납세자 본인	24,300,000
배우자	2,025,000
부양자 (최대 3인)	2,025,000
의무비용공제 (총소득의 5% 한도, 최대 Rp. 500,000/월)	6,000,000
사회보장공단( <i>BPJS Ketenagakerjaan</i> )에 지급하는 노후연금저축 본인부담분 (총소득의 2%)	Full amount
연금 납부액 (총소득의 5% 한도, 최대 Rp 200,000/월)	2,400,000

### Tax residence 세무상 거주자

다음의 조건을 갖춘 개인은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개인;
- 인도네시아에 12개월 내에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
-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의도를 가진 개인.

주: 조세협약이 상기 규정에 우선함.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대하여 PPh 26에 따라 2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Registration and filing 등록과 신고

소득공제금액(PTKP)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는 국세청에 세무등록을 하고 개인소득세의 확정신고(Form 1770)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 급여소득·투자소득·자본소득·해외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개인의 자산부채 상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장의 세무등록번호(*Nomor Pokok Wajib Pajak/NPWP*)를 사용하는 단일 신고대상으로 간주되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소득이 PPh 21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가장의 소득과 함께 과세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Tax payments 납세방법

개인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3자에 의해 원천징수 된다는 점입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기타보상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PPh 21과 26)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이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이 경감될 수 있음).

개인에게 다양하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지급을 포함합니다:

- 정부승인 연금펀드에서 지급되는 연금지급;
- 퇴직금 지급;
- 사회보장제도 (*Jamsostek*)에서 지급하는 노후 저축;
- 서비스 수수료;
- 포상금 및 상금.

PPh 21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소득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이나 특정 전문가, 예를 들어 변호사·공증인·회계사·건축사·의사·계리사 및 감정평가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총수입금액의 50%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종업원 개인의 소득이 되며, 이퇴직금관리조직"이 은행인 경우는 20%의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PPh 23에 따른 15%의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됩니다.

### Benefits-in-kind (BIKs) 복리후생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주택, 교육, 휴가 및 세금보상 등의 복리후생은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불산입으로 처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복리후생(예를 들어, 방호복, 근무복, 출퇴근 교통비, 선원 등에 대한 숙박시설 제공 및 오지에 지급하는 현물 및 시설제공)도 동일하게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회사가 지급하는 복리후생은 종업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 1984년 이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광산회사와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ors);
- 해외 기업의 대표사무소로서, 법인세 납세자가 아닌 경우;
- 최종분리과세를 적용받는 회사; 그리고
- 인정이윤 과세대상 회사(항공 및 해운회사 포함).

### 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장제도

고용주는 종업원이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종업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고용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포괄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다음의 기관에서 관할합니다:

1. Social Security Agency for health insurance (*BPJS Kesehatan*) – 건강보험 관할
2. Social Security Agency for worker's social security (*BJPS Ketenagakerjaan*) – 상해보험, 노후저축, 사망보험 및 연금 관할

현행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Areas covered	통상임금대비 요율	
	고용주 부담	종업원 부담
산업재해 보상	0.24-1.74%	-
사망보험	0.3%	-
노후저축	3.7%	2%
건강보험		
a. 2014년 1월 1일 부터	4%	0.5%
2015년 6월		
30일까지	4%	1%
b. 2015년 7월 1일 부터		

모든 종업원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하기와 같이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대상 : 국영기업, 대규모기업 및 중소법인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대상 : 영세기업
-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대상 : 개인사업자 및 비근로자

### Deemed salaries 간주급여

석유 및 가스 기업 (oil and gas drilling companies)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급에 따라 특정 금액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며, 간주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US\$ per month (gross before tax)
General managers	11,275
Managers	9,350
Supervisors and tool pushers	5,830
Assistant tool pushers	4,510
Other crew	3,245

간주과세소득은 복리후생을 포함한 근로에 대한 모든 대가를 고려한 것으로  
봅니다.

## Withholding Taxes 원천징수세

### General 일반

인도네시아 소득세는 주로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 징수됩니다.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원천징수세는 해당 소득세법 조항 (*Pajak Penghasilan/PPh*)을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i) Article 21 income tax (*PPh 21*): 급여에 대한 소득세

회사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동 원천세는 컨설턴트 또는 용역제공자와 같은 종업원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적용됩니다(개인소득세 참조).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개인 거주자는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ii) Article 22 income tax (*PPh 22*): 수입 등에 대한 소득세

*PPh 22*는 다음의 특정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No	Event	세율 (%)	과세표준	Notes
1	수입라이선스( <i>Angka Pengenal Impor/API</i> )를 통한 수입: a. 특정 최종소비재 b. 품, 밀, 밀가루 c. (a)와 (b) 이외의 재화	7.5 0.5 2.5	수입가격 (i.e., CIF 가격 + 관세)	
2	수입라이선스( <i>API</i> )를 통하지 않은 수입	7.5	수입가격 (i.e., CIF 가격 + 관세)	
3	경매 수입품	7.5	경매가격	
4	정부에 대한 재화의 판매로, 국고나 대행기관 ( <i>Kuasa Pengguna</i> )	1.5	판매가격	1

No	Event	세율 (%)	과세표준	Notes
	<i>Anggaran/KPA)이</i> 지금하는 경우			
5	정부소유기업( <i>Badan Usaha Milik Negara/BUMN</i> )에 대한 재화의 판매	1.5	판매가격	1
6	정부소유 주유소의 유류구매	0.25	판매가격	2
7	민간 주유소의 유류구매	0.3	판매가격	2
8	정부 및 민간 주유소가 아닌 유류구매	0.3	판매가격	2
9	가스연료 구매	0.3	판매가격	2
10	윤활류 구매	0.3	판매가격	2
11	로컬 유통업체의 시멘트 구매	0.25	판매가격	
12	로컬 유통업체의 종이제품 구매	0.1	판매가격	
13	로컬 유통업체의 철강제품 구매	0.3	판매가격	
14	로컬 유통업체의 자동차제품 구매	0.45	판매가격	
15	로컬 유통업체의 의약제품 구매	0.3	판매가격	
16	독점에이전트( <i>Agen Tunggal Pemegang Merek/ATPM</i> ),에이전트( <i>Agen Pemegang Merek/APM</i> ) 및 일반 수입자로부터 오토바이 구매	0.45	판매가격	3
17	조림, 플랜테이션, 농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도매업자로부터 원자재 구매	0.25	판매가격	
18	고급 사치품 구매	5	판매가격	

## Notes:

- (4)와 (5)의 경우, PPh 22 징수자 (State Treasury, BUMN, etc.)는 반드시 특정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PPh 2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구매/사용에 대한 지불은 예외로 함:
  - 유류연료, 가스연료, 윤활류, 우편제품;
  - 수도와 전력;
  - PSC 계약자나 계약자의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석유, 가스 (upstream 부산물 포함); 그리고
  - Join Operation Contract의 계약자로부터 공급받는 지열 전력.
 또한, (4)의 경우 Rp 2 million 및 (5)의 경우 Rp 10 million 이하에 해당하는 재화의 구매에 대하여는 PPh 22가 면제됩니다. 그 외의 경우,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자 또는 구매자는 수입 또는 구매하는 재화의 대가에 PPh 22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된 PPh 22는 법인/개인 소득세의 기납부세액을 구성합니다. 다만, 유통업체가 구입하는 유류연료, 가스연료나 윤활유로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18)에 따라 PPh 22가 적용되는 고급 사치 오토바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또는 국세청이 발급한 면제증명서 (Exemption Certificate)에 따라 PPh 2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재화의 수입/구매.
  - b. 수입관세 그리고/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0%의 수입관세가 적용되는 재화의 수입.
  - c.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재화 (예를 들어, 재수출되는 재화).
  - d. 재수입되는 재화 (예를 들어, 동일한 동일한 품질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거나, 수리나 테스트 목적으로 수입되어 다시 재수출되는 경우).
  - e. 금괴의 수입/구매로 재수출을 위한 보석류 생산을 위한 경우 및 국립학교 운영 보조금 (Bantuan Operasional Sekolah/BOS) 펀드 사용과 관련된 경우, PPh 22는 면제됩니다.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경우, 표준세율에 10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iii) Article 4 (2) – final income tax (*PPh Final*): 최종분리과세

거주자인 회사, 고정사업장,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와 단체 및 지정된 개인은 거주자인 납세자와 고정사업장에 다음의 지급을 할 때에 최종분리과세의 원천징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세율
1. 토지건물 임대	10%
2. 토지건물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 (양수도 계약서에 의거)	5%
3. 건설 시공대가	2/3/4%
4. 건설 설계대가	4/6%
5. 건설 감리대가	4/6%
6. 예적금 이자와 중앙은행 예금증서 (Bank Indonesia Certificates, 'SBIs')에 대한 이자(인도네시아에서 영업중인 은행이나 정부승인 연금펀드에 지급하는 경우 제외)	20%

구분	세율
7. 채권 이자(인도네시아에서 영업중인 은행이나 정부승인 연금펀드에 지급하는 경우 제외)	15% <sup>1</sup>
8.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의 주식매각. 동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주(Founder)는 상장시 시장가격의 0.5%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시 차익에 대하여 일반 과세규정을 적용(조세협약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	0.1%
9. 복권당첨금	25%
10. 연간 매출액이 Rp 4.8 billion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의 특정 소득(단, 고정사업장은 해당되지 아니함)	1% <sup>2</sup>

## Notes:

- 수령인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toritas Jasa Keuangan/OJK*)에 등록된 뮤추얼펀드인 경우, 2020년까지는 5%를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10%를 적용합니다. 수령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20%를 적용하며 조세협약에 따라 경감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직접 인도네시아 과세관청에 계산, 납부 및 보고하여야 합니다.

## (iv) Article 23 income tax (PPh 23): 특정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거주자인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특정한 다음 소득에 대하여는 PPh 23에 따라 지급 총액의 15% 또는 2%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 PPh 23에 따라 지급 총액에 15%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배당;
  - 프리미엄·디스카운트·보증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 로열티;
  - 포상금 및 상금.
- PPh 23에 따라 지급 총액에 2%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토지·건물을 제외한 자산의 임대
  - 기술 서비스
  - 경영 서비스
  - 컨설팅 서비스
  - 감정평가 서비스
  - 계리 서비스

7. 회계, 장부기장 및 증명 서비스
8. 설계 서비스
9. 석유 및 가스 시추 서비스(고정사업장이 수행하는 경우 제외)
10. 석유 및 가스 시추 관련 지원 서비스
11. 석유 및 가스 이외의 광산 서비스
12. 항공운송 및 공항 서비스
13. 산림채벌 서비스
14. 폐기물처리 서비스
15. 인력공급/아웃소싱 서비스
16. 중개/에이전시 서비스
17. 증권거래 및 예탁서비스(stock exchanges, KSEI and KPEI 제외)
18. 사운드더빙 서비스
19. 필름믹싱 서비스
20.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21. 설치용역 서비스(예를 들어, 전기, 기계 또는 통신장비). 단, 허가받은 건설회사가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22. 유지보수 서비스(예를 들어, 전기, 기계 또는 통신장비). 단, 허가받은 건설회사가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23. 위탁제조 서비스(*maklon*)
24. 검사 및 보안 서비스
25. 이벤트 제공 서비스
26. 포장 서비스
27. 대중매체, 옥외광고 매체 및 기타 매체에 정보송출을 위해 장소 또는 시간 제공
28. 해충구제서비스
29. 청소 서비스
30. 캐터링 서비스

(v) Article 26 income tax (*PPh 26*)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거주자인 납세자, 단체 및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는 비거주자에게 다음의  
지급을 할 때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a. 총액기준:

1. 배당;
2. 프리미엄·디스카운트·보증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3. 로열티, 임차료 및 자산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4. 서비스, 작업 및 활동에 대한 수수료;
5. 상금 및 포상금;
6. 연금과 다른 정기적 지급;
7. 스왑 프리미엄과 다른 헤지거래;
8. 채무면제이익;
9.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의 세후이익.

## b. 총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인정과세표준 (Estimated Net Income, 'ENI') 기준:

	ENI	유효세율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는 보험 프리미엄:		
피보험자	50%	10%
인도네시아 보험회사	10%	2%
인도네시아 재보험회사	5%	1%
비상장 인도네시아 회사 주식의 매각	25%	5%
조세피난처인 국가에 소재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의 매각으로, 도관회사가 인도네시아 내 회사나 고정사업장 보유를 위한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25%	5%
사치 보석, 다이아몬드, 금, 고가시계, 골동품, 그림,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 및 경비행기 매각으로 매각금액이 Rp 10 million 를 초과하는 경우	25%	5%

수취인이 인도네시아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국제 조세협약

### Double Taxation Agreements 이중과세 방지협약

인도네시아의 이중과세 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조세협약)은 협약 상대국의 세무상 거주자가 수취하는 용역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와 배당·이자·로열티·지점이윤세에 대한 원천세율의 경감을 통해 조세혜택을 부여합니다. 용역 수수료에 대한 면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수취하는 외국 거주자가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외국 거주자는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최소한 소득을 지급하는 인도네시아의 거래상대방을 통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거주자증명원 (Certificate of Domicile, 'CoD')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서식 혹은 조세협약 상대국에서 정한 서식(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합니다.

배당·이자·로열티에 대하여는 보통 수익적 소유자 (beneficial owner)가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로 인식됩니다. 관련 조세협약에서 수익적 소유자 (beneficial ownership)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경우, 당해 수익적 소유자 요건은 외국 납세자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수익적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a. 개인, 다만 대리인이나 명의대여자 (nominee)로서 수익을 수취하는 경우 제외.
- b. 조세협약에 명시된 기관 및 인도네시아 공정거래위원회 (the Competent Authority)와 조세협약 상대국에서 인정한 기관.
- c.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 주식 혹은 채권 거래를 통하여 소득(이자와 배당 제외)을 수취하는 해외거주자, 다만 대리인이나 명의대여자 제외.
- d.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통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회사.

- e. 조세협약 상대국에서 과세되는 승인된 연금펀드.
- f. 은행, 또는
- g.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
  - 1. 조세협약 상대국가에서 설립되었고, 거래구조가 단순히 조세협약상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경영진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것.
  - 2. 종업원이 있을 것.
  - 3. 영업활동 또는 수행중인 사업이 있을 것.
  - 4.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취한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대상일 것.
  - 5. 다른 상대방에게 총소득의 50% 이상을 의무이행을 위해 이자·로열티·배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

조세협약상 주요 국가별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Notes	Dividends		Interest	Royalties	Branch Profit Tax
		Portfolio	Substantial holdings			
1. Algeria		15%	15%	15/0%	15%	10%
2. Australia		15%	15%	10/0%	15/10%	15%
3. Austria		15%	10%	10/0%	10%	12%
4. Bangladesh		15%	10%	10/0%	10%	10%
5. Belgium		15%	10%	10/0%	10%	10%
6. Brunei		15%	15%	15/0%	15%	10%
7. Bulgaria		15%	15%	10/0%	10%	15%
8. Canada		15%	10%	10/0%	10%	15%
9. China		10%	10%	10/0%	10%	10%
10. Croatia		10%	10%	10/0%	10%	10%
11. Czech Republic		15%	10%	12.5/0%	12.5%	12.5%
12. Denmark		20%	10%	10/0%	15%	15%
13. Egypt		15%	15%	15/0%	15%	15%
14. Finland		15%	10%	10/0%	15/10%	15%
15. France		15%	10%	15/10/0%	10%	10%
16. Germany	1	15%	10%	10/0%	15/10%	10%
17. Hong Kong		10%	5%	10/0%	5%	5%
18. Hungary	3	15%	15%	15/0%	15%	20%
19. India		15%	10%	10/0%	15%	10%
20. Iran		7%	7%	10/0%	12%	7%
21. Italy		15%	10%	10/0%	15/10%	12%

##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Notes	Dividends		Interest	Royalties	Branch Profit Tax
		Portfolio	Substantial holdings			
22. Japan		15%	10%	10/0%	10%	10%
23. Jordan	3	10%	10%	10/0%	10%	20%
24. Korea (North)		10%	10%	10/0%	10%	10%
25. Korea (South)	2	15%	10%	10/0%	15%	10%
26. Kuwait		10%	10%	5/0%	20%	10/0%
27. Luxembourg	1	15%	10%	10/0%	12.5%	10%
28. Malaysia	4	10%	10%	10/0%	10%	12.5%
29. Mexico		10%	10%	10/0%	10%	10%
30. Mongolia		10%	10%	10/0%	10%	10%
31. Morocco		10%	10%	10/0%	10%	10%
32. Netherlands		10%	10%	10/0%	10%	10%
33. New Zealand	3	15%	15%	10/0%	15%	20%
34. Norway		15%	15%	10/0%	15/10%	15%
35. Pakistan	1	15%	10%	15/0%	15%	10%
36. Papua New Guinea	1	15%	15%	10/0%	10%	15%
37. Philippines		20%	15%	15/10/0%	15%	20%
38. Poland		15%	10%	10/0%	15%	10%
39. Portugal		10%	10%	10/0%	10%	10%
40. Qatar		10%	10%	10/0%	5%	10%
41. Romania		15%	12.5%	12.5/0%	15/12.5%	12.5%
42. Russia		15%	15%	15/0%	15%	12.5%
43. Seychelles	3	10%	10%	10/0%	10%	20%
44. Singapore		15%	10%	10/0%	15%	15%
45. Slovakia		10%	10%	10/0%	15/10%	10%
46. South Africa	3	15%	10%	10/0%	10%	20%
47. Spain		15%	10%	10/0%	10%	10%
48. Sri Lanka		15%	15%	15/0%	15%	20%
49. Sudan		10%	10%	15/0%	10%	10%
50. Suriname		15%	15%	15/0%	15%	15%
51. Sweden		15%	10%	10/0%	15/10%	15%
52. Switzerland	1	15%	10%	10/0%	10%	10%
53. Syria		10%	10%	10/0%	20/15%	10%
54. Taiwan		10%	10%	10/0%	10%	5%
55. Thailand		20%	15%	15/0%	15%	20%
56. Tunisia		12%	12%	12/0%	15%	12%
57. Turkey		15%	10%	10/0%	10%	10%
58. Ukraine		15%	10%	10/0%	10%	10%
59. United Arab Emirates		10%	10%	5/0%	5%	5%
60. United Kingdom		15%	10%	10/0%	15/10%	10%

	Notes	Dividends		Interest	Royalties	Branch Profit Tax
		Portfolio	Substantial holdings			
61. United States of America		15%	10%	10/0%	10%	10%
62. Uzbekistan		10%	10%	10/0%	10%	10%
63. Venezuela	1	15%	10%	10/0%	20%	10%
64. Vietnam		15%	15%	15/0%	15%	10%
65. Zimbabwe	1,5	20%	10%	10/0%	15%	10%

## Notes:

- 인도네시아에서 제공된 기술지원료, 경영지원료 및 컨설팅 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스위스는 5%, 독일은 7.5%, 룩셈부르크·파푸아뉴기니·베네수엘라·짐바브웨는 10%, 파akistan은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국제선 항공 또는 선박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상호면제됨.
- 조세협약이 지정이윤세율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20%를 적용함.
- The Labuan Offshore Business Activity Tax Act 1990에 따른 Labuan offshore 회사에 대하여는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음.
- 조세협약이 비준되었으나 비준서류의 교환 보류로 발효되지 않음. 2015년 1월 1일 발효 예정.

**Permanent establishment time test 고정사업장 기간적용 기준**

인도네시아내에서 특정기간을 초과하여 특정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조세협약에 규정된 특정 활동에 대한 특정 기간 요약표입니다:

	Bldg. Site Construction	Installation	Assembly	Supervisory Activities	Other Services
1. Algeria	3 month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2. Australia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3. Austr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4. Bangladesh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91 days
5. Belgium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6. Brunei	183 days	3 months	3 months	183 days	3 months
7. Bulgar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20 days
8. Canada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b>Bldg. Site Construction</b>	<b>Installation</b>	<b>Assembly</b>	<b>Supervisory Activities</b>	<b>Other Services</b>
9. Chin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0. Croat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11. Czech Republic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12. Denmark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13. Egypt	6 months	4 months	4 months	6 months	3 months
14. Finland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15. France	6 months	---	6 months	183 days	183 days
16. Germany	6 months	6 months	---	---	---
17. Hong Kong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 Hungary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4 months
19. India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91 days
20. Ir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21. Italy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22. Japan	6 months	6 months	---	6 months	---
23. Jord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 month
24. Korea (North)	12 months	12 months	12 months	12 months	6 months
25. Korea (South)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26. Kuwait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27. Luxembourg	5 months	5 months	5 months	5 months	---
28. Malays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29. Mexico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91 days
30. Mongol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1. Morocco	6 months	---	6 months	6 months	60 days
32. Netherland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3. New Zealand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4. Norway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5. Pakistan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
36. Papua New Guinea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37. Philippines	6 months	3 months	3 months	6 months	183 days
38. Poland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120 days

	<b>Bldg. Site Construction</b>	<b>Installation</b>	<b>Assembly</b>	<b>Supervisory Activities</b>	<b>Other Services</b>
39. Portugal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40. Qatar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41. Roman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4 months
42. Russia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
43. Seychelle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44. Singapore	183 days	183 days	183 days	6 months	90 days
45. Slovak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91 days
46. South Afric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20 days
47. Spain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3 months
48. Sri Lanka	90 days	90 days	90 days	90 days	90 days
49. Sud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50. Suriname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91 days
51. Swede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52. Switzerland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
53. Syr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54. Taiw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20 days
55. Thailand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56. Tunisia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57. Turkey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58. Ukraine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4 months
59. United Arab Emirate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0. United Kingdom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91 days
61. United States of America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62. Uzbekist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63. Venezuel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
64. Vietnam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65. Zimbabwe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조세정보 교환협정**

인도네시아는 Guernsey, Jersey, Bermuda, The Isle of Man 및 San Marino와 5개 국가와 조세정보 교환협정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을 체결하였습니다. The Isle of Man과의 조세협정은 2014년 9월에 발효되었으며, 이외의 협정은 비준절차에 있으며,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 **조세행정공조조약**

인도네시아는 2011년 11월 3일에 조세행정공조조약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MAATA')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10월 17일에 비준되었습니다. 동 조약은 아직 발효전이며, 2016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 General 일반

부가가치세는 인도네시아 과세지역(custom area) 내에서 과세대상 재화의 이동이나 과세대상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거래(events)에 부과합니다.

과세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b.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
- c.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 d. 과세지역 밖의 과세대상 무형자산을 과세구역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 e. 과세지역 밖의 용역을 과세구역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 f. 과세사업자에 의한 과세대상 유무형재화의 수출.
- g. 과세사업자에 의한 과세대상 용역의 수출.

부가가치세 의무는 연간 공급가액이 Rp. 4.8 billion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a. 계약에 따른 과세대상 재화에 대한 권리의 양도;
- b. 할부구매 (hire-purchase) 또는 금융리스 계약에 따른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c. 중개상에게 또는 경매를 통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d. 과세대상 재화의 자가사용 및 무상제공;
- e. 법인 청산 시 잔존 과세대상 재화로, 판매목적이 아닌 재고 혹은 기타자산;
- f. 과세대상 재화의 내부거래(예를 들어, 지점간 또는 본지점간), 다만 국세청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총괄신고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관련규정: 국세청장시행규칙 No. PER-19/PJ/2010];
- g. 위탁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h. 샤리아 금융구조에 따른 과세사업자의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Tax rates and tax base 세율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며, 정부 규정에 의하 최저 5%, 최고 15%로 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유무형재화의 수출과 용역의 수출에 대한 세율은 0%입니다. 다만, 용역 수출의 영세율 적용은 특정 항목에 국한됩니다.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은 관련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 당사자간 합의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래를 포함한 특정 사건과 상황에서는 거래가격이 아닌 다른 기준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 a. 특수관계자간 거래, 청산 시 과세대상 잔존 재고 및 판매목적이 아닌 재화의 매각인 경우 시장가치;
- b. 자가사용, 무상제공 및 과세대상 재화의 내부거래(예를 들면, 지점간 또는 본지점간)의 경우 매출원가(판매가격에서 매출총이익을 차감한 금액);
- c. 경매관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의 경우 경매(낙찰)가격;
- d. 중개상을 통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의 경우 합의된 가격;
- e. 비디오와 오디오 레코딩 제품의 경우 평균 판매가격;
- f. 영화의 경우 필름당 평균 관람료;
- g. 수입영화의 경우 편당 Rp 12 million;
- h. 자가건설건물의 경우 토지취득가를 제외한 총 건설원가의 20%;
- i. 담배제품의 수입과 공급의 경우 소매판매가격;
- j. 포장선적 서비스, 여행 및 여행대행 서비스의 경우 실제 청구금액의 10%;
- k. 귀금속(귀금속 관련 공장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포함) 공급의 경우 판매가격의 20%;
- l. 운송료와 함께 청구되는 운송주선용역의 경우 실제 청구금액의 10%.

법률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와 용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Non-taxable Goods 비과세재화*

- a. 자연 상태에서 직접 채굴된 광물과 탐사물, 예를 들어 원유·천연가스·지열에너지·모래와 자갈·석탄(연탄가공 이전)·철 원광·구리 원광·금 원광·은 원광·알루미늄 원광;
- b. 쌀·소금·옥수수·녹말가루·콩과 같은 기초생활품;
- c. 호텔과 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나 음료 등으로 객장에서 소비되거나 외부에서 소비되는 것, 캐러팅 되는 음식과 음료를 포함함; 그리고
- d. 화폐, 금괴와 유가증권.

*Non-taxable Services 비과세용역*

- a. 의료 서비스;
- b. 고아원 장례식장과 같은 사회봉사 서비스;
- c. 우표를 사용한 우편 서비스;
- d. 금융 서비스;
- e. 보험 서비스;
- f. 종교 서비스;
- g. 교육 서비스;
- h. 예술 및 공연 서비스;
- i. 광고목적이 아닌 방송 서비스;
- j. 육상, 해상, 국제항공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내국항공인 대중교통;
- k. 인력용역 서비스;
- l. 호텔 서비스;
- m.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 n. 주차 서비스;
- o.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전화 서비스;
- p. 현금 송금서비스; 그리고
- q. 음식 또는 케터링 서비스.

## VAT reporting 부가세 신고

과세사업자 (*Pengusaha Kena Pajak/PKP*)로 지정된 회사와 개인은 매월 사업활동을 보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장별로 계산되며, 따라서 여러 사업장 (branches)을 보유한 기업은 각각의 사업장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관할세무서 (*Kantor Pelayanan Pajak/KPP*)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 과세재화의 내부거래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서면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총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대상 제외의 내부거래는 신고에서 제외합니다.

다음의 관할세무서에 등록된 회사는 반드시 부가세총괄신고를 해야합니다:

- a. 대규모 납세자 관할세무서 (Large Taxpayers Office, 'LTO');
- b. 외국인 투자법인 관할세무서 (*Penanaman Modal Asing/PMA*);
- c. 특정 외국법인 및 외국인 관할세무서 (*Badan dan Orang Asing/Badora*);
- d. 상장법인 관할세무서 (*Perusahaan Masuk Bursa/PMB*); 그리고
- e. 중규모 납세자 관할세무서 (Mid-size Taxpayers Office, 'MTO').

## Input-output mechanism 매입매출 정산구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입-매출 구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판매자는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며, 이는 판매자의 관점에서 매출 부가세가 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구매자의 관점에서 매입 부가세입니다. 해당 재화 및 용역이 구매자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러한 매입세액은 매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시 지불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일 기간내 총 매출세액이 총 매입세액을 초과한다면 납세자는 해당 차액을 다음달 말 부가세 신고기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총매입세액이 총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달 납부할 금액에서 이월공제하거나 매년말 연도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Import and self-assessed VAT 수입 및 자기징수 부가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외국의 과세대상 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소비에 적용되는 자가징수 (self-assessed) 부가가치세 역시 표준 매입매출 정산구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거주자인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는 인도네시아의 매입자/수입자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매입자/수입자는 비거주자인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VAT Collector 부가세 징수자

그러나, 부가가치세 징수자 (VAT Collector)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적인 매출매입 정산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징수자는 현재 재무부 (State Treasury), 정부소유기업 (*Badan Usaha Milik Negara, 'BUMN'*) 및 PSC (Product Sharing Contract)회사입니다. 명칭 그대로 부가가치세 징수자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시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공급자 대신 정부에 직접 부가가치세를 대납할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징수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회사는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환급 (Overpayment Position)이 발생하게 됩니다.

## Crediting input VAT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정 과세기간(월)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대응되어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이 아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세무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별 세금 계산서의 유효성은 매입세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의 이름과 주소 및 납세자번호(NPWP);

- b. 매입자의 이름과 주소 및 납세자번호(NPWP);
- c. 재화와 용역의 종류, 수량, 공급가액 및 할인액;
- d. 부가가치세 금액;
- e. 사치품에 대한 사치세(Luxury-goods Sales Tax, 'LST') 금액;
- f. 세금계산서 코드, 일련번호 및 발행일자; 그리고
- g.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이름과 서명.

상기 최소 필요정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과세사업자(PKP)는 전자 형식의 세금계산서 (electronic Faktur Pajak/e-FP)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2016년 7월1일부터는 모든 과세사업자(PKP)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때;
- b.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이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대금을 지급한 때;
- c. 단계별로 진행되어 일부가 공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 또는
- d. 재무부장관령에 의해 규정되는 다른 경우.

#### VAT refunds 부가세 환급

매 회계연도 말,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당국은 환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가세 세무조사를 근거로 환급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2개월 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 환급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후에 제출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 계산 시, 세무당국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Golden taxpayer, *WP Patuh*)로 분류된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세무조사 전 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세무당국은, 세무신고를 기한 내에 하였을 것·체납사실이 없을 것·조세범칙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성실납세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DGT는 이러한 규정에 기초하여 매년 성실납세자를 지정하며,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는 조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실납세자가 조기환급을 받기위해서는 관련요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례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문서로서 세무당국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은 부가세 신고가 세무당국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환급 신청서가 접수된 후 1개월 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세무당국은 조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승인 한후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과다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금액의 10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관련규정: 조세기본법 제17C조, 재무부장관령 No.192/PMK.03/2007]

특정 납세자(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자, 부가세 징수자에게 공급하는 자, 상업생산 이전단계의 회사, 부가세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특정 요건 충족시 매월 환급이 가능합니다.

## VAT exemption facilities 부가세 면제혜택

### Strategic goods 전략적 재화

전략적 재화로 지정된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전략적 재화의 지정은 정부령에 따릅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재화가 전략적 재화에 포함됩니다:

- 과세대상 재화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플랜트·설비 형태의 자본재;
- 축산제품·수산업제품;
- 전기(단, 6,600 와트를 초과하는 가정 전력 제외);
- 상수공급회사에 의해 파이프로 공급되는 물;

- e. 소·가금류·어류의 사료 및 사료 제조를 위한 원재료;
- f. 농업·농장·조림·축산 제품에 필요한 종자 및 씨앗류.

#### Other VAT exemption schemes 기타 부가세 면제

특정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수입과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a. 군대나 경찰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기, 탄약, 군함 차량
- b. 법정 예방접종용의 소아 예방 백신
- c. 일반 교육 및 종교 관련 서적
- d. 국영 선박 및 어업 회사의 선박과 부품류
- e. 국영 항공 회사의 항공기 및 부품류
- f. PT. Kereta Api Indonesia 사에 의한 철도 차량과 부품류
- g. 저가격의 가옥, 학생용 주거
- h. PT. Kereta Api Indonesia 사에 의한 철도 차량의 유지와 수선 서비스
- i. 선박의 임대, 항만, 선박 유지를 포함하는 국영 선박 및 어업 서비스
- j. 항공기의 임대 및 유지 서비스를 포함하는 국영 항공 회사 서비스
- k. 저가격의 가옥, 종교상 예배 목적 건물의 건설에 관한 서비스
- l. 저가 주택의 임대

## Luxury-goods Sales Tax 사치품 소비세

부가가치세에 더해, 특정 과세물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사치품 소비세(LS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치품 소비세는 재화의 수입 또는 제조업자에 의한 공급에 대해 부과됩니다.

사치품 소비세는 매월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되어야 하며, 해당 재화의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치품 소비세 관련 내용 요약표는 아래와 같으며, 하기 요약표 상의 특정 물품은 용량, 크기 또는 가격 등의 요소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및 관련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HS(Harmonized System) Code를 사용하여 Customs Book을 참고해야 합니다.

현행 부가세 및 사치품소비세법에 따르면, 소비세율은 2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비세율은 10%~125%입니다.

### Taxable goods other than motor vehicles

Group	LST Rates (%)					
	10	20	30	40	50	75
Household appliances, coolers, heaters, and television broadcasting receivers, aerials, aerial reflectors.	•	•				
Sport equipment, articles and accessories.	•		•		•	
Air conditioners, dish washing machines, driers, and electromagnetic devices	•	•				
Video recording or reproduction devices.	•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devices and related accessories.	•					

Group	LST Rates (%)					
	10	20	30	40	50	75
Luxury residences such as luxury houses, apartments, condominiums, town houses and the like.		●				
Perfumes.		●				
Ships or other water vehicles, row boats and canoes, except for state or public transportation needs.			●	●		
Musical instruments.			●			
Articles made of leather or artificial leather.					●	
Carpets made from silk or wool.				●		
Glassware of lead crystal of the type used for tables, kitchens, makeup, offices, or indoor decoration for similar purposes.				●		
Articles partly or wholly made of precious metal or metal coated with precious metal or a mixture thereof, and/or pearl or a mixture thereof.				●		●
Balloons, dirigibles, and other un-powered aircraft				●		
Shotguns and other arm cartridges, firearms and other arms, except for the state purposes.			●		●	
Footwear.			●			
Home and office furniture and fixtures.			●			
Articles made of porcelain, china clay, or ceramic.			●			
Articles partly or wholly made of stones, other than curb stone.			●			
Carpets made of fine animal hair.				●		
Aircraft other than those for the state or commercial air-transport purposes.				●		
Luxury cruisers, except for the need of the state and public transport.						●

## Motor vehicles

Vehicle Type	Wheel Driver System	Motor System Engine	Cylinder Capacity (CC)	LST Rate
Passenger vehicles, capacity fewer than ten people				
• Sedan/ station wagon	All types	Spark ignition	≤1500 >1500 up to 3000 >3000	30% 40% 75%
		Compression ignition (diesel/ semi diesel)	≤1500 >1500 up to 2500 >2500	30% 40% 75%
• Other than sedan/ station wagon	4X2	Spark ignition	≤1500 >1500 up to 2500 >2500 up to 3000 >3000	10% 20% 40% 75%
		Compression ignition (diesel/ semi diesel)	≤1500 >1500 up to 2500 >2500	10% 20% 75%
	4X4	Spark ignition	≤1500 >1500 up to 3000 >3000	30% 40% 75%
		Compression ignition (diesel/ semi diesel)	≤1500 >1500 up to 2500 >2500	30% 40% 75%
Passenger vehicles, capacity 10 to 15 people	All types	All types	All types	10%
Double-cabin vehicles	All types	All types	All types	20%
Special-purpose vehic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l types of vehicles for golf</li> <li>• Vehicles used to travel on snow, beaches, and mountains</li> <li>• Caravan-type trailers and semi-trailers for residential and camping purposes</li> </ul>				50% 60% 75%
Two-wheel motor vehicles			>250 up to 500 >500	60% 75%

## Customs and Excise 관세와 소비세

### Import Duty 수입관세

수입관세는 수입되는 재화의 관세가격에 0%-150%를 적용합니다. 다만, 현행 최고 세율은 40%입니다. 관세가격은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level)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Group	Goods	Rate (%)
Automobiles	Passenger & commercial	5 to 40
Automobile parts		0 to 10
Vessels	Ship,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0 to 5
Electronic goods		0 to 12.5
Footwear		5 to 25
Beverages, ethyl alcohol & alcoholic drinks	Ethyl alcohol, beer, wine, spirits and other beverages	5 to 30, Rp. 14,000 to Rp. 125,000/ltr
Essential oils and resinoids	Odoriferous substances	5 to 150
Agricultural products	Animal & vegetable products	0 to 25
Textile, textile products and accessories	Bags, harnesses, apparels, and clothing accessories, etc	5 to 15
Other	Chemicals, pharmaceutical products, plastic and rubber products, etc.	0 to 25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나 사회문화적 이유로 특정 산업과 재화를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ASEAN duty rates

부품을 함유한 재화로서 ASEAN 국가간 직접 무역에 의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일정한 관세 경감이 이루어집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ASEAN 무역협정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을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습니다.

ASEAN 국가간 무역 증진을 위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에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Free Trade Area (FTA) Agreement duty rates

또한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a. ASEAN – China FTA (ACFTA)
- b. ASEAN – Korea FTA (AKFTA)
- c. ASEAN – India FTA (AIFTA)
- d. ASEAN - Australia - New Zealand FTA (AANZFTA)
- e. Indonesia –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JEPA)

### Duty relief/exemption/deferral 관세 경감/면제/유예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과 국내 투자자에게 관세 경감·면제 및 유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대개 부가세와 소득세와 같은 다른 조세 혜택과 함께 부여됩니다.

## Export Duty 수출관세

수출관세는 관세가격 (*ad valorem*)에 특정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거나, 특정 통화로 관세율/물량을 특정하여 산출합니다. 관세가격은 가격 벤치마크와 일관되게 관세청장(Director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이 결정합니다.

Group	Goods	Rate (%)
Leather and wood	Leather made from certain furry animals, veneer, chip wood, processed wood	2 to 25
Cocoa beans		0 to 15
Palm fruit, Crude Palm Oil (CPO) and its derivative products	Fresh fruit bars, CPO, Crude Palm Kernel Oil (CPKO), hydrogenated CPO/CPKO, Palm Fatty Acid Distillate (PFAD), biodiesel	0 to 40
Mineral concentrates	Metals, non-metals, stones	20 to 25

\*) 수출관세율은 2014년 1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 ~ 60% 범위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Excise 증지세

증지세는 특정 재화의 공급과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로 인해 통제되어야 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현재, 증지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에틸 알코올, 알코올 음료와 담배제품입니다. 증지세율은 에틸 알코올과 알코올 음료의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리터당 Rp 13,000에서 Rp 139,000), 담배제품에 대하여는 담배 제조회사의 구분에 따라 적용됩니다(개피 또는 그램당 Rp 6에서 Rp 110,000). 특히 담배 제품에 대하여, 관계 제조사 그룹에 적용되는 증지세율은 총 생산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계 제조사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 목적의 일반적인 특수관계자 정의와 다르며, 재무부 (MoF)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Tax Concessions 조세편의

### Income Tax Concessions 소득세 편의

#### Tax holiday 조세감면

일부 회사는 정부로부터 법인소득세 감면의 형태로 상업생산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종료 이후, 회사는 2년간 추가로 50%의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선도산업 (pioneer industries)으로서 광범위한 연관관계를 통해, 추가적인 가치창출과 높은 외부효과가 있고, 신기술을 제공하며,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다섯개의 사업영역에서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 금속, 정유, 석유 가스 원천의 기초 유기화학, 신재생에너지, 기계산업과 통신.

상기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납세자는 2010년 8월 14일 이전에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었고, 최소 Rp 1 trillion (약 USD 102 million)의 신규 자본투자 계획에 대해 승인 받았으며, 계획된 투자금의 최소 10%를 인도네시아 소재 은행에 예치하고, 투자 계획의 실현 이전에 예치금을 인출하여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상공부 (Minister of Industry, 'MoI') 또는 투자조정청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BKPM*)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후, 상공부 또는 투자조정청장은 재무부(MoF)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조세감면 신청은 2015년 8월 15일까지 재무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면신청 승인을 받게되면, 납세자는 투자 계획의 실현과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사용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 계획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기 정기 보고서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조세감면 혜택은 철회됩니다.

### **Inbound investment incentives 투자 인센티브**

국세청은 투자조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무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 혜택을 특정 사업 또는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상업생산 시점부터 연간 5%씩, 6년간 투자금액의 30% 까지 소득공제(단, 6년간 투자된 자산이 이전되지 않아야 함);
- 가속상각 인정;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최장 10년까지 연장;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세율 10%로 경감(또는, 조제협약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 가능).

이러한 조세 혜택은 납세자가 투자 지출계획의 최소 80% 이상을 실현한 이후에 주어집니다.

재무부의 승인을 얻기 이전에, 투자조정청장의 투자 승인과 추천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 **Reinvestment of branch profits 지점이윤의 재투자**

고정사업장이 세후 이익을 동일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까지 인도네시아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지점이윤세는 면제됩니다. 재투자는 다음의 형식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에 신규 설립하는 회사에 지분참여를 통해 설립자가 되거나 또는 설립자로 참여하는 경우.
- 지분참여를 통해 기 설립된 인도네시아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경우.
-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활동 수행을 위해 고정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활동 수행을 위해 고정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신규 설립되는 회사에 투자한 주식은 상업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2년간 양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 설립된 인도네시아 회사에 대한 투자, 고정자산의 취득 및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간 투자가 양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 **Tax cut for public companies 상장회사에 대한 조세감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발행 주식수의 최소 40%이상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IDX)에 상장되어야 하며, 동 주식이 보호예수기관에 보호예수되어야 함;
- 총발행주식의 5%미만을 보유한 300명 이상의 개인에게 분산되어야 함;

이러한 두가지 조건은 과세기간 중 최소한 183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혜택은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Tax neutral mergers 비과세 합병**

사업의 합병·결합이나 사업 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변경에 따른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손실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장부가액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의 비과세 합병 혹은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합병 또는 결합계획이 사업목적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금지되며,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에 해당하는 기업분할에도 합병과 유사한 별도의 국세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 동일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toritas Jasa Keuangan/OJK*)에 IPO 등록을 한다는 유효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변경이 있는 경우, 기한은 국세청에 의해 4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LST Concessions

### LST incentive for motor vehicles

다음의 LST 인센티브가 친환경 오토바이에 대하여 적용되며, LST 세율은 10%, 20%, 30%, 40% 또는 125%가 적용됩니다. LST 과세표준은 판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며 혹은 특정 오토바이에 대하여는 L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LST Base	Incentive Program
75%	Motor vehicles using advance diesel/petrol engine technology, dual petrol gas engines (converter kit CNG/LGV), biofuel engines, hybrid engines, CNG/LGV dedicated engines with oil fuel consumption (and other similar fuel) of 20 to 28 km/litre
50%	Motor vehicles using advance diesel/petrol engine technology, biofuel engines, hybrid engines, CNG/LGV dedicated engines with oil fuel consumption (and other similar fuel) of more than 28 km/litre
0%	Motor vehicles under Low Cost Green Car and Low Carbon Emission programs, other than sedans or station wagons, with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spark ignition up to 1200 CC, or 2. compression ignition (diesel/semi diesel) up to 1500 CC with oil fuel consumption (and other similar fuel) of at least 20 km/litre

## Collective concessions on special project and special zones

### Foreign loan-funded and foreign grant-funded government projects

#### 해외차입이나 해외차관의 정부프로젝트

해외차입 또는 차관을 통하여 수행하는 정부프로젝트는 해당 자금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에 대하여 특정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는 정부 Project Table of Contents (*Daftar Isian Proyek/DIP*) 또는 유사한 문서를 통해 발표됩니다.

해외자본이나 차관을 통한 정부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요 계약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정부가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2차(second-level) 계약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혜택과는 별도로, 해외자본이나 차관을 통한 정부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요 계약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재화의 수입과 해외 과세대상 용역의 사용 및 해외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관세 면제;
- 부가가치세 및 LST 비징수;
- 수입선납법인세 (PPh 22) 비징수.

부가가치세가 비징수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요 계약자·컨설턴트·공급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해외차입 또는 해외차관이 부분적으로만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세혜택도 해외차입 또는 차관금액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 Integrated Economic Development Zones 통합경제개발지구

통합경제개발지구 (Integrated Economic Development Zone, 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KAPET)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APET로 지정된 지역은 특정 대통령령을 통해 발표되며, 현재 13개의 KAPET 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조세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사치품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LST 비징수;
- 생산활동과 직접관련된 자본재와 장비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선납법인세 (PPh 22) 면제;
- 자본재, 장비 및 가공을 위한 재화와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 이연;

- 기계장치와 특정 부속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4년간 면제.

### **Bonded Zones 보세구역**

보세구역 (Kawasan Berikat/KB)은 주로 수출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내수 판매금액이, 직전연도 수출금액과 다른 보세구역으로 판매한 금액의 50%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수입하는 자본재와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관세 및 다른 수입관련 세금(예를 들어, 부가가치세·LST·선납수입법인세)이 면제됩니다:

- 추가가공을 위한 재화의 수입이나 국내 구매;
- 보세구역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비품의 수입;
- 보세구역 내에서 혹은 보세구역 회사에서 생산활동과 직접연관되어 사용하는 장치, 장비와 기계류의 수입.

보세구역 회사간의 재화이동과 보세구역 회사와 하청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화이동 역시 동일한 조세혜택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LST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추가 가공을 위한 보세구역회사로부터 다른 보세구역회사로의 제품 출하;
- 하청계약에 의해 보세구역회사에서 과세지역내의 비보세구역 회사로 자재나 제품의 출하, 또한 비보세구역 회사로부터 보세구역 회사로의 재출하;
- 보세구역회사로부터 다른 보세구역회사 및 과세지역 내의 비보세구역회사로 플랜트, 기계 및 장비의 대여, 또한 하청계약에 의한 보세구역 회사로 동일 기계나 장비의 재출하.

### **Bonded warehouse 보세창고**

보세창고 혜택은 제조업에 사용되는 재화에 적용됩니다. 수입관세 및 수입관련 세금(예를 들어, 부가가치세·LST·선납수입법인세)은 재화가 내국 시장에 공급될 때까지 납부가 이연됩니다.

### FTZ in Batam, Bintan and Karimun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 'FTZ' 또는 *Kawasan Perdagangan Bebas/KPB*)로 반입되는 재화와 자유무역지대 내의 회사들간에 공급되는 재화 또한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대 충족을 위한 행정요건:

1. Business License from the Management Board of FTZ (*Badan Pengusahaan Kawasan/BPK*)
2. 수입재화는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이 있어야 함.
3. 자유무역지대에는 관세조세 및 관세 페널티 등과 같은 관세절차가 적용됨.
4.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Pengusaha Kena Pajak/PKP*)로 등록할 필요는 없음.

자유무역지대로 반입되는 재화와 자유무역지대 내의 회사들간에 공급되는 재화는 수입관세와 소비세 (excise)가 면제됩니다. 또한 수입관련 세금(예를 들어, 부가가치세·LST·선납수입법인세)이 비과세됩니다

무형자산과 과세대상 용역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도네시아 과세지역 내로 공급되거나 보세구역 회사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자유무역지대로부터 인도네시아 과세지역으로 유출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수입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BKPM Masterlist facility

투자조정청(BKPM)은 특정 전략적 재화에 대하여 Masterlist를 발행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계장치와 원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LST, 선납수입법인세와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조세혜택이 부여됩니다.

### Tax exemption and drawback facilities for exports 수출에 대한 조세면제와 환급

온전히 수출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세혜택으로 KITE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제도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mport duty, VAT and LST exemption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및 LST 면제

최종 생산재화가 수출되는 경우, 대부분의 원재료는 수입관세의 납부없이 수입이 가능하도록 면제혜택이 주어집니다.

Import duty drawback 수입관세의 환급

최종적으로 수출된 완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기 납부된 수입관세에 대하여, 수출된 완제품 생산에 소요된 부분만큼 환급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Land and Building 부동산세

### Land and Building Tax 토지 및 건물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세 (*Pajak Bumi dan Bangunan/PBB*)가 부과됩니다. PBB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건물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행정목적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것;
- 종교, 사회복지, 보건, 교육, 국가문화와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
- 묘지, 고고학 유적지 등과 유사한 것;
- 보호삼림, 자연보호지구, 관광목적상 삼림, 국립공원, 지역관할 목초지와 과세권이 없는 국유지;
- 상호 동등대우 원칙에 따른, 외교공관의 토지와 건물;
- 재무부(MoF)에서 인정한 국제기구의 토지와 건물.

PBB는 지방세법 (*Pajak Daerah dan Retribusi Daerah/PDRD*)의 적용을 받는 지방세의 일부로, 각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적용될 PBB를 관장하기 위한 규정 (*Peraturan Daerah/PERDA*)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PDRD)하의 PBB는 삼림·플랜테이션·광산지역과 같이 별도 규정에 의해 규정되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토지와 건물에 적용됩니다.

PBB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과세통지서 (*Surat Pemberitahuan Pajak Terhutang/SPPT*)에 따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가진 개인과 조직 및 건물의 소유권·통제권이나 수익권을 가진 개인과 조직은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PBB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PDRD)에 따른 PBB 세율은 최고 0.3%이며, 납세금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판매가치(부동산과세적용가액, *Nilai Jual Objek Pajak/NJOP*)에서 비과세 금액 (Non-taxable NJOP)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비과세 금액은 최저 Rp 10 million 에서 결정됩니다. 관련규정 (PERDA)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x on land and building transfer 토지와 건물 이전관련 세금**  
토지와 건물의 이전이 있는 경우, 매도자에게 이전/판매에 대한 인정이익 (deemed gain)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는 총 이전대가(과세표준)에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단순 주택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가 매수자에게 이전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세금은 최종분리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관련 공증문서에 따른 실거래금액에 기초한 거래가치(실제양도가액)와 부동산과세적용가액 (NJOP) 중 큰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 이전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정부기관에 의해 관련 문서에 기초하여 공식적으로 결정됩니다. 정부에서 수행하는 경매의 경우, 거래가치가 관련 문서에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이 됩니다.

공증인은 해당 소득세가 완전히 납부되기 전까지 권리이전 공증문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Duty on the acquisition of land and building rights 토지건물 취득에 따른 의무**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토지건물 취득에 따른 의무 (*Bea Pengali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를 부담하게 됩니다. BPHTB 는 지방세법 (PDRD)에 따른 지방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적격한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은 매매,

증여, 상속, 법인에 대한 기증, 등기분할, 경매, 법원명령의 실행, 기업인수, 합병, 결합, 확장 및 포상 등을 포함합니다.

BPHTB는 부동산취득적용가액 (*Nilai Perolehan Objek Pajak/NPOP*)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토지건물의 권리에 대한 부동산과세적용가액 (*Nilai Jual Objek Pajak/NJOP*) 또는 시장가치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세금액은 부동산취득적용가액(NPOP)에서 비과세상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5%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비과세상한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최저 Rp. 60 million이나, 상속의 경우 최저 Rp. 300 million에서 시작함. 정부는 비과세상한금액을 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BPHTB는 공증인의 입회하에 토지건물의 권리가 이전되는 관련 문서가 서명되는 날에 납세의무를 일반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합병·결합 또는 확장의 경우, 해당 합병·결합 또는 확장 문서에 서명한 날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경매의 경우, 권한있는 공무원이 경매 보고서에 서명하는 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증인은 해당 BPHTB가 완전히 납부되기 전까지 권리이전 공증문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 **Stamp Duty 인지세**

인지세는 소액으로 특정문서에 대하여 Rp. 6,000 또는 Rp. 3,000 의 고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민사상 행위·사실 또는 조건의 증거로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동의서와 다른 서류(예를 들어, 위임장·수여증·신고 등).
- b. 공증서와 그 사본.
- c. 지정된 토지공증인(*Pejabat Pembuat Akta Tanah/PPAT*)이 작성한 공증서.
- d. 다음의 화폐금액을 포함한 문서:
  - 금전영수증
  - 은행의 예금 또는 거래 증명서
  - 은행계좌 잔액 증명서
  - 채무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한 상환 확인서
  - 각종 주요 서류로, 드래프트, 지불약정서나 수취확인서
  - 유가증권으로 이름 또는 형식 불문
  - 수표.
- e. 법원에서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는 문서:
  - 통상의 문서 혹은 내부 자료
  - 본래 인지세가 사용목적상 면제되는 서류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관계자가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a), (b), (c) 및 (e)의 경우 Rp. 6000 이 적용됩니다. (d)의 경우,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 Rp. 1 million 를 초과하는 경우 Rp. 6,000 을 적용하며, Rp. 250,000에서 Rp. 1 million 사이인 경우 Rp. 3,000 를 적용합니다. Rp. 250,000 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표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Rp. 3,000 를 적용합니다.

## ***Tax Payments and Tax Return Filing***

### **납부 및 신고**

특정기간 또는 연간 발생한 납세의무는 지정된 은행 (*bank persepsi*)을 통해 국고에 일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세무신고 서식을 통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와 신고는 월간 또는 연간으로 수행되며 연간 및 월간 모두 수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와 신고의무는 전자형식으로 이행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납부 의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Monthly tax obligations 월 세무신고 의무**

Type of tax	납부기한	신고기한
Article 21/26 Income Tax	익월 10일	익월 20일
Article 23/26 Income Tax	익월 10일	익월 20일
Article 25 Income Tax	익월 15일	익월 20일
Article 22 Income Tax – Tax Collector	익월 10일	익월 20일
Article 4(2) Income Tax	익월 10일	익월 20일
VAT and LST – Taxable Enterprise	신고기한 전	익월 말일
VAT and LST – VAT Collector	신고기한 전	익월 말일

### Annual tax obligations 연 세무신고 의무

Type of tax	납부기한	신고기한
법인소득세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신고전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개인소득세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신고전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Land and Building Tax (PBB)	지방정부로부터 납세통지서(SPPT) 수취 후 6개월 이내	N/A

상기 세금의 지연납부 시, 월 2%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최대 48%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개월의 일부 기간 지연(예를 들어, 1일 지연)도 1개월 지연으로 간주됩니다.

지연 세무신고 또는 미신고에 대하여 다음의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Type of tax return	Rupiah
VAT return	500,000
Other monthly tax returns	100,000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100,000
Corporate income tax return	1,000,000

연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납세자는 최장 2개월의 신고연장을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이전에 DGT에 임시 납세액과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시 납세액은 연장통보서 제출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실제 세액이 임시 납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족분 납부시 까지 월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경우, DGT는 납세자에게 경고서한 (warning letter)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경고서한은 일반적으로 경고서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한을 무시하는 경우, DGT 는 결정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소득세를 제외한 세금은 개별 신고되어야 합니다. 전국에 걸쳐 사업장을 보유한 회사는 사업장이 등록된 관할 세무서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세무신고는 전자세무신고 (e-tax returns)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일부 특정납세자는 예외). 전자세무신고는 해당 과세관청에 하드카피와 소프트카피를 동시에 지출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으며, 개인인 경우 DGT 웹사이트를 통해 e-tax 신고를 할 수 있고, e-filing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 Accounting for Tax 세무기장

일반적으로 세무목적상, 회사의 장부는 세법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장부는 Rupiah로 기장하고,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며, 인도네시아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Penanaman Modal Asing/PMA*), 고정사업장, 외국계 회사의 자회사, 해외상장 납세자 및 인도네시아 재무회계기준(*Standar Akuntansi Keuangan/SAK*)상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기능통화를 USD로 하는 납세자는 DGT의 승인을 받아 USD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를 영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투자계약 (Collective investment contract, *Kontrak Investasi Kolektif/KIK*)은 USD 표시 투자 펀드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 USD 기장이 허용됩니다. [관련규정: 국세청장시행규칙 No. PER-10/PJ/2012]

DGT 승인신청은 USD 기장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이전에 DGT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DGT는 1개월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1개월 내 결정이 없는 경우, 신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Production Sharing Contract (PSC) 또는 Contract of Work (CoW)을 적용받는 회사는 DGT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USD와 영어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는 USD 기장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이전에 DGT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과 USD 이외의 통화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화와 언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조세납부는 Rupiah로 해야하며 신고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PSC 회사 제외). 연 법인세신고 시, USD는 Rupiah와 병행표시하여야 합니다.

USD 장부기장 승인을 받은 회사는 DGT 의 승인 하에 다시 Rupiah 기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SD 기장을 취소한 이후 5 년간, USD 기장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Tax Audits and Tax Assessments***

### **세무조사와 세금추징**

인도네시아는 납세자가 현행 세법과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계산, 납부 및 신고하여야 하는 자진신고납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DGT는 이러한 자진신고납부가 납세의무를 다한 것인지 세무조사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또는 검증의 결과로 세금추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Tax audits 세무조사**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특정 과세기간(1 개월) 또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특정 세목에 대하여 또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회사에서 또는 DGT에서, 혹은 둘 모두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Conditions triggering a tax audit 세무조사 실시 요건**

환급신청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수반합니다. DGT는 환급신청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세무조사는 대개 환급신청일로부터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시작됩니다. 법인세 환급신청 시, 일반적으로 모든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세목에 대한 환급신청 시, 일반적으로 해당 세목만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DGT는 다른 세목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포지션 (overpayment position)인 경우 (환급신청 여부 불구);
-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세무상 결손인 경우;
- 납세자가 회계기간이나 장부기장 방법을 변경하거나 유형자산 재평가를 수행한 경우;
-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경고서한에 기재된 기한 이후 신고한 경우로, 위험 분석에 기초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DGT 에서 정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무신고 (요건은 미공개).

### One-month rule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는 조사관이 요청한 문서와 정보를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납세자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 문서를 포함합니다. 1개월 이내에 해당 문서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DGT 는 추정 이익을 기초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1개월 내에 제출되지 않은 문서와 정보를 추정세액 금액에 대한 분쟁 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Closing conference 종료회의

세무조사 종료 시점에, 조사관은 세무조사 수정 (corrections)을 포함한 조사 발견사항을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조사 발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사관과의 종료회의(최종 협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납세자는 7~10 영업일 내에 문서로 통지에 대한 반론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료회의 시, 납세자는 세무조사 수정과 관련된 입장을 다시 주장하고 관련 증거 문서를 제출합니다. 조사 발견사항에 대한 협의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납세자는 지방국세청 (Regional Tax Office)의 품질감리팀 (Quality Assurance Team, 'QAT')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내용은 QAT 가 준비한 문서로 기록됩니다.

세무조사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답변과 QAT 토론결과 및 종료회의에서의 토론을 거쳐 최초 조사결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토론결과는 종료회의록에 기록되며 조사건별로 납세자의 '동의 (Agree)' 또는 '미동의 (Disagree)' 입장을 언급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항목중 세무조사원이 인정하는 항목 및 특정 조사결과에 대한 취소 또는 감액 등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최종회의시 세무조사원과 납세자는 회의록 말미에 서명을 하며, 서명은 납세자에게 조사결과가 통보된 이후 1개월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료회의는 최초 시작으로부터 최장 3 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종료회의시 납세자가 동의한 수정항목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문서로 발행되는 추징세액 (tax assessment) 중 최소한으로 납부해하여야 합니다.

### Products of a tax audit 세무조사 결과물

법적으로 규정된 세무조사 결과물은 위에서 언급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Surat Ketetapan Pajak /SKP)와 징수통지서 (Surat Tagihan Pajak /STP)로 구성되며, 이는 종료회의록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징수통지서(STP)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SKP)가 규정하지 못하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사용되며, 세무당국은 당해연도의 특정기간동안의 납부세액 및 지연이자를 결정하는데 이를 사용합니다.

### Verification 입증

입증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거나 획득한 다음의 다른 정보 (other information)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해명결과 (clarification results)/ VAT 세금계산서 확인;
- 원천징수 납부증빙 (withholding tax slips);
- 납세자가 기한 내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면 확인서를 받았거나, 경고서한 내의 특정 기간 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된 납세자료; 또는
- 납세자의 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 증빙이나 납세자료.

국세청은 입증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추징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추징통보 이전에 반드시 종료회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Tax assessments 세금추징

세금추징결정서 (tax assessment letter)는 특정 과세기간 또는 연간의 개별 세목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의 특정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납부세액;

- 적용가능한 공제세액;
- 납부세액과 공제세액의 차액 (과다납부, 'o' 또는 과소납부);
- 행정 벌과금 (지연이자 또는 부과금).

### Types of tax assessment letters 세금추징결정서의 종류

세금추징결정서의 명칭은 납부세액과 공제세액의 가감결과에 따라 다르며, 결과적으로 다음의 3 가지 세금추징결정서가 있습니다:

- 과다납부 세금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Lebih Bayar/SKPLB*), 납부세액이 공제세액보다 작은 경우;
- 과소납부 세금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 납부세액이 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o (Nil)의 세금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Nihil/SKPN*), 납부세액과 공제세액이 동일한 경우.

과소납부 세금추징결정서 (SKPKB)가 발행된 경우, 다음의 행정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 2%의 지연이자, 최대 24 개월까지;
- 소득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과금;
- 원천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벌과금;
- VAT 및 LST 의 100%에 해당하는 벌과금.

납세자가 어떠한 부정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적용하는 벌과금이 달라집니다. 벌과금 금액은 과소납부 금액에 관련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세무조사나 입증에 입각한 세금추징과 별도로, 국세청은 특정 기한 내 세무신고의무를 부여한 경고서한을 무시하거나 인정된 기준에 따라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세금추징결정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 Payments of tax assessment 세금추징액의 납부

세금추징결정서에 따른 납부세액은 관련 결정서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의(Objection)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은 압류영장(Distress Warrant)을 통해 징수됩니다.

## Statute of limitation 소멸시효

현행 조세행정법에 따라, 국세청은 2008년을 포함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납세의부가 발생한 과세기간(월) 또는 과세연도의 말로부터 5년이내에만 과소납부 세금추징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월 또는 연도에 대한 세금추징이 결정되고 나면, 소멸시효(납세년도에 따라 5년 또는 10년)내에 납세신고서 또는 세무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자료 또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추가적인 세금추징결정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과소납부 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Tambahan/SKPKBT*)에는 납부세액의 100%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이전에 그 정보를 자발적으로 세무당국에 알리는 경우 벌과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서의 납부세액은 특정시효내에 납부추징결정이 없다면 확정금액이나, 시효가 지난 이후 법원판단에 의해 조세범죄가 확정된다면 시효 이후라도 추가적인 납부추징(과소납부 세금추징결정서/SKPKB 또는 추가 과소납부 추징결정서/SKPKBT)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납부추징액에 과소납부세액의 48%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 ***Tax Collection Using Distress Warrant***

### **압류영장을 통한 징수**

합법적인 조세 징수방법으로 기한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압류영장 (Distress Warrant, *Surat Paksa*)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조세 징수방법은 다음의 문서를 포함합니다:

- 징수통지서 (Tax Collection Letters/STP);
- 과소납부 세금추징결정서 (Underpaid Tax Assessment Letters/SKPKB);
- 추가 과소납부 추징결정서 (Additional Underpaid Tax Assessment Letters/SKPGBT);
- 이의제기 결정서 (Tax Objection Decision Letters), 납세자의 추가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 조세법원 결정서 (Tax Court Decisions), 납세자의 추가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 수정 결정서 (Correction Decision Letters), 납세자의 추가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수령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고지받은 과소납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연납부시 1개월당 2%씩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현행 조세행정법 상, 납세자가 특정 세금추징결정서에 대하여 이의신청 (Objection)이나 이후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입증 종료회의에서 납세자가 동의한 금액에 대하여만 최소한의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료회의시 동의하지 아니한 추징세액 부분은, 이후 국세청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조세법원 소송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소납부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압류영장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 경고서한 (*Surat Teguran*) 발행: 납부기한 종료후 7일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 b. 압류영장 (Distress Warrant, *Surat Paksa*) 발행: 경고서한 발행 이후 21일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 c. 재산몰수명령서 (Confiscation Order, *Surat Sita*) 발행: 압류영장 발행이후 48시간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 d. 물수재산에 대한 경매공고: 재산몰수명령서 발행 이후 14일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 e. 경매 실행: 경매공고 이후 14일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 ***Tax Dispute and Resolution 조세불복과 해결***

납세자와 국세청간의 조세불복은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 (SKP)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발생합니다. SKPKB, SKPKBT 및 STP는 납세자가 기한내에 과소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압류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합법적인 조세징수 방법입니다. 국세청이 압류영장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자간 또다른 조세불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Objections 이의신청**

세금추징결정서에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는 결정서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신청 (Objection, Keberatan)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납세자가 납세금액을 산출하고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결정서 (Objection Decision Letters)를 발행해야 합니다. 12 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세청에 의해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과소납부금액의 50%가 벌과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소납부금액과 벌과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이의신청은 제 3 자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도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이의신청 제출기한 및 국세청의 결정기한이 적용됩니다.

## Appeals 소송

국세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세법원에 소송 (*Banding*)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이의신청 결정에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조세법원법 (Tax Court Law)에 따라 납세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납부세액의 최소 5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행정법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종료회의시 동의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법률간 상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조세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행정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세법원은 12개월 이내에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조세법원 판결에 따른 과소납부 세액에 대하여 100%의 별과금이 부과됩니다.

## Other avenues for tax dispute resolution

### 조세불복 해결의 다른 방법

국세청은 납세자의 수정요청 (Correction Request)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세금추징결정서 또는 결정서에 기초한 파생되는 결정에 대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생되는 결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이의신청 결정서 (Objection Decision Letters);
- 행정별과금에 대한 감면 또는 취소 결정서 (Decision Letters on the Reduction or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 세금추징 감면 또는 취소 결정서 (Decision Letters on the Reduction or Cancellation of Tax Assessment);
-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조기환급 결정서 (Decision Letters on an Early Refund of Overpaid Tax).

국세청은 수정요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결정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정요청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세청의 수정요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세법원에 소송 (*Gugata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상대로한 소송은 압류영장 실행에 대하여도 조세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은 실행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조세법원은 6 개월 이내에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 **Judicial Review Requests to the Supreme Court 대법원 소송**

조세법원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최종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조세불복과 관련된 당사자는 조세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 (*Judicial Review Request, Peninjauan Kembali/PK*)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때에 가능합니다:

1. 소송 상대방의 위증·사기·거짓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2. 중요한 문서증거가 발견되었고, 이러한 문서증거가 조세법원에서 고려되었다면 다른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경우;
3. 청구의 일부분이 이유없이 무시된 경우;
4. 청구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된 경우;
5. 결정이 현행 세법규정과 명백히 상충하는 경우.

대법원 상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과 2 의 경우 기한은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이며, 3 과 4 와 5 의 경우 기한은 조세법원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입니다.

## **Contacts 연락처**

Our Tax professionals are available to advise and help you with all aspects of taxation and to ensure that you meet your commitments efficiently and promptly.

If you have any queries, contact your usual consultant or any of the following tax professionals:

### **General Inquiries**

Ay Tjhing Phan  
Runi Tusita

### **International Tax**

Ay Tjhing Phan  
Brian Arnold  
Gadis Nurhidayah

### **Dispute Resolution**

Engeline Siagian  
Ay Tjhing Phan  
Ali Widodo  
Anton Manik  
Suyanti Halim  
Adi Poernomo  
Mardianto  
Parluhutan Simbolon  
Sutrisno Ali

### **International Assignments (IAS)**

Engeline Siagian  
Paul Raman  
Hisni Jesica  
Ariel Rahardjo  
Trinyotin

### **Inward Investment**

Laksmi Djuwita  
Adi Pratikto  
Shanty Irawati

### **Mergers & Acquisitions**

Andrias Hendrik  
Felix MacDjuwita  
Yuliana Kurniadjaja  
Alexander Lukito

Payroll outsourcing	Laksmi Djuwita Djumanto
Transfer Pricing	Ay Tjhing Phan Peter Hohtoulas Ryuji Sugawara Deny Unardi Ryosuke R Seto Abraham Siahaan Kian Wei Chong Amit Sharma Satria Nanda
Indirect Taxes (VAT)	Abdullah Azis
Customs	Laksmi Djuwita Enna Budiman Irvan Ardi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 Telecommunications and Communications	Ay Tjhing Phan Engeline Siagian Ali Widodo Anton Manik Hendra Lie Brian Arnold Abdullah Azis Andrius Hendrik Yessy Anggraini Antony Tamren Hanna Nggelan Oki Octabiyanto Sujadi Lee Kexin Lim Harry Wijayanto Susetyo Putranto
Energy (Hydrocarbons and Renewables), Utilities and Mining	Tim Watson Anthony J. Anderson Antonius Sanyojaya Suyanti Halim Alexander Lukito Gadis Nurhidayah

Tjen She Siung  
Elsa Tirta  
Raemon Utama  
Felix MacDonogh  
Makung Heryassin  
Rita Susanto  
Verita

**Financial Services and Insurance** Margie Margaret  
Ivan Budiarnawan  
Yuliana Kurniadjaja  
Khairul Feriyanto

***Other contacts***

Korean Business Desk

Lok Budianto  
Taehun Jung (taehun.jung@id.pwc.com)  
Seungsu Nam (seungsu.nam@id.pwc.com)

## **A Summary of Indonesian Tax**

The information in this booklet sets out tax law and practice as of 31 December 2014.

This booklet is intended as a general guide. While every care has been taken in its preparation, no guarantee is given as to the correctness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and no liability is accepted for any statement or opinion, or for any error or omission, in it. In specific circumstances, professional advice should be sought.

The information in this publication is prepared for the sole use of partners, staff and selected clients. Whilst every care has been taken in the preparation of this publication, no guarantee is given as to the correctness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and no liability is accepted for any statement or opinion, or for any error or omission.

When specific problems occur in practice, it may be necessary to refer to laws and regulations and to obtain appropriate tax and other advice.

**PT Prima Wahana Caraka  
(a member of the PricewaterhouseCoopers network of firms)**

Plaza 89  
Jl. H.R. Rasuna Said Kav. X-7 No.6  
Jakarta 12940 - INDONESIA  
P.O. Box 2473 JKP 10001  
Telp: +62 21 5212901  
Fax: +62 21 5290 5555/5290 5050

**[www.pwc.com/id](http://www.pwc.com/id)**

**Cover photo by Indra Kantawibawa**

PwC Indonesia is comprised of KAP Tanudiredja, Wibisana, Rintis & Rekan, PT Prima Wahana Caraka, PT PricewaterhouseCoopers Indonesia Advisory and PT 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Indonesia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and all of which together constitute the Indonesian member firm of the PwC global network, which is collectively referred to as PwC Indonesia.

© 2015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